

서울특별시 성동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중 “50,000원”을 “6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당직수당의 지급) 「서울 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7조제4항에 따라 당직 수당 지급액은 <u>50,000원</u> 으로 한 다.	제20조(당직수당의 지급) ----- ----- ----- ----- <u>60,000원</u> ----- --.